C - 56 - 2017

리모델링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건축물의 리모델링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축물의 리모델링작업 중에서 해체작업, 보수·보강작업, 인테리어 및 외장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리모델링(Remodeling)"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1) "증축"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.
 - 2) "대수선"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내력벽을 증설·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면적을 30 m²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- 기둥을 증설·해체하거나 기둥을 3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- 보를 증설·해체하거나 보를 3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- 지붕틀을 증설·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-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·해체하거나 수선·변경 하는 것
 - 주계단,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·해체하거나 수선·변경하는 것
 -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(담장포함)를 수선 · 변경하는 것